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8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은정 · 서왕진 · 정춘생
이해민 · 차규근 · 김준형
진선미 · 강경숙 · 백승아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폭력범죄자, 정신질환자 등 범죄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는 직무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및 폭력·위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가 누적되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수용자의 인권은 강화되고 있으나,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교정공무원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송치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97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약 57% 증가함.

또한, 2024년 실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자살계획 경험률과 자

살시도 경험률은 일반 성인 대비 각각 약 2.7배와 1.6배로 나타남.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정공무원이 16명에 달한다는 점 역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함.

다른 연구(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 비교, 2021)에 따르면,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지수가 모든 하위영역에서 경찰공무원보다 높았음. 그러나 경찰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 보호와 지원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법무부는 교정기관 야간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특수건강검진비는 2024년부터 3년간 동결임.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이 업무 강도·위험성에서 유사한 직종임을 고려할 때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안전 및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에서 기인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임.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

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소속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다.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라.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마. 수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바.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사.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경계 및 운영·관리

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교정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정공무원의 배우자

나. 교정공무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정시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교정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라.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교정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정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정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 제7조(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시기·주기, 진료의 대상·방법·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숙소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교정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퇴직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정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정시설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